

전시회 참가 신청서

* 신청자(계약자)

회 사 명			
주 소			
전 화		팩 스	
담 당 자	(직위:)	휴 대 폰	
전 시 품 목			
브 랜 드 명			
이 메 일		홈페이지 주소	

* 전시회 안내자료 제작 시 확인용으로 사용되오니 정확히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.

* 신청 전시회 : 7회 호치민 (5/30~6/2) / 8회 하노이 (9/27~9/29)

* 참가비

구분	부스명	단가	부스수		
			7회	8회	
참가비 (9㎡/부스)	독립부스	₩ 2,900,000	부스	부스	
	조립부스	₩ 3,200,000	부스	부스	
	프리미엄부스 (6부스 이상)	₩ 4,300,000	부스	부스	
	참가비계			원	원
	총합계				원
계약금(50%)		원	잔금(50%)	원	

- * 하단 및 이면의 전시회 참가규정을 수락하고 상기와 같이 해당 전시회에 참가를 신청합니다.
- * 신청부스 수량을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할인금액이 적용된 인보이스를 보내드립니다.
- * 호치민, 하노이 모두 참가하시는 경우 하노이 전시회에 30만원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.
- * 조기신청 할인(2019년 2월 28일까지) : 호치민, 하노이 각각 30만원 할인 적용됩니다.

201 년 월 일

전시회 참가 신청자

회사명 : _____

대표자 : _____ (인)

1. 계약서 상의 전시품과 상이한 상품을 전시하는 경우 주최자는 전시품을 철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. (참가비 반환 불가)
2.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본 신청서는 참가 계약의 효력을 갖습니다.
3. 법적으로 소송중인 제품은 출품을 금지합니다.

제출처	(주)세계전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(문정동) SK V1 GL매트로시티 C동 514호 • 전화 : 02-3453-2117 • 팩스 : 02-3453-4445
참가비 납품처	계좌 - 신한은행 : 342-05-000470 (주)코엑스 • 은행납부시 필히 회사 / 기관명 명기 • 납부후 전화통보 요망 전화 : 02-6000-1169
유첨	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

베트남 국제 베이비&키즈페어

전시회 참가규정

제1조 (용어의 정의)

'전시회'라 함은 호치민(5월)과 하노이(9월)에서 개최되는 베트남 국제 베이비&키즈페어를 말한다. '전시자'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(계약)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,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. '주최자'라 함은 코엑스(COEX), (주)세계전람(SEGE Fairs Co.,Ltd.)를 말한다.

제2조 (전시 부스 할당)

주최자는 신청 접수순, 전시품목, 참가규모,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.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전시회 준비 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게 할당된 전시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으로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3조 (참가비 납부 절차)

참가신청(계약)서는 (주)세계전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이와 동시에 참가비(부스 비용)의 50%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잔금(부스비용의 50%) 및 부대시설 신청 비용은 전시회 개막 한 달 전까지 신청서에 명기된 계좌(코엑스)로 납부한다.

제4조 (참가 신청(계약) 해지)

전시자가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주최자가 정한 전시회 운영규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, 주최자는 일반적으로 참가신청(계약)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
제5조 (참가 취소 및 규모축소 위약금)

전시자가 참가신청(계약)서 제출 후 신청한 전시 부스 일부 또는 전체를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사용취소 후 15일 이내에 코엑스(COEX)에 지불하여야 한다. 단,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납입을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.

- 전시회 개최 61일 전까지 : 참가비의 50% X 취소면적 / 신청면적
- 전시회 개최 60일 전부터 31일 전까지 : 참가비의 80% X 취소면적 / 신청면적
- 전시회 개최 30일 전부터 개최일까지 : 참가비의 100% X 취소면적 / 신청면적

제6조 (설치 및 철거)

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, 전시자는 지면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7조 (주최자에 대한 정보 제공)

전시자는 주최자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전시회 참가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장치물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회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8조 (보험, 보안 및 안전)

전시자는 전시 기간은 물론, 설치 및 철거 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분할 수 있다. 단, 도난, 파손, 분실 등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 보험에 부분하여야 한다. 주최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하나,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, 파손, 분실 등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.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, 주최자는 필요시 시공 작업 및 제품 시연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9조 (전시 부스 활용)

전시자는 참가신청(계약)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 요원을 전시 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.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된 면적을 벗어날 수 없으며,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주최자의 별도 허가 없이 전시장 내 판매행위는 일체 금지한다.

제10조 (전시회 변경)

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주최자는 기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. 단, 위기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주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전시회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.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11조 (보충규정)

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 및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 전시자는 전시장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2조 (분쟁해결)

본 참가 규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며,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.

위 참가 규정 및 계약 조건을 모두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

대표자(신청인) : _____ (인)